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6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소병훈·안호영·이재관

황운하 • 이병진 • 윤종군

한민수 · 정성호 · 박 정

권칠승·송재봉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, 기금관리기관의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.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

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"를 "본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미수금의 대지급) ① ~	제22조(미수금의 대지급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	4
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	
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	<u>본인</u>
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	
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	
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	
자에게 그 대지급금(代支給金)	
을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	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